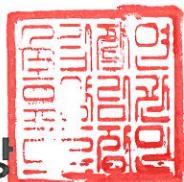


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 2020-29호 〕

분묘개장 공고

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 (개장공고 이후 지형지물상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)

2020년 03월 16일



공고인 :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